

해외출장 보고서

-빅데이터 분석기반의 위기청소년 예측 및 적시대응 기술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송태민 연구위원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출장자:** 송태민 연구위원, 이연희 책임전문원, 정진욱 부연구위원, 진달래 연구원

□ **출장기간:** 2014.10.12.-10.16(4박 5일)

□ **출장목적:** 위기 청소년의 통계 추출 방법 및 현황 파악, 위기에 직면한 청소년
시책 및 내용 파악, 비행청소년의 유형별 현황 및 지원 대책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 자살, 히키코모리 등에 대한 치유 대책 논의

□ **방문기관**

- 동경도청 청소년 대책과
- 교토 가정지원통합센터

□ **일정별 활동 내역**

년월일	행 선 지 (국가/도시)	방문기관/면담자	활 동 사 항
2014.10.12	일본	한국-일본(동경) 이동	출국
2014.10.13	동경	동경공업대학/ 이중순 (동경공업대학 상정보연구소 교수), Suzuki Siroyuki (동경공업대학 상정보 연구원 조교), Taira Naoco (동경공업대학 상정보연구소 연구원), Kida Gouichi (보건의료복지정보안전관리 적합성평가협회 이사장), Kaoru Sunada (일본국제대학교 연구조교수)	동경도요코인호텔(일본의 빅데이터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
2014.10.14	동경	동경도청 청소년과/ Gatumata Ichirou, Kiyamita Katuhiro	동경도청 청소년과 방문(위기에 직면한 청소년 파악을 위한 대응 및 전략, 동경도 청소년 시책 내용 파악)
	교토	동경-교토 이동	도시간 이동
2014.10.15	교토	교토가정지원통합센터/ Shirokazu Muneo, Miyake Sayuri, Kanamori Masaaki	교토 가정지원통합센터(청소년 정신건강, 자살, 히키코모리 등에 대한 치유 정책, 청소년 환경적 위해요인에 대한 대책, 청소년 정신건강 자살 인터넷 중독에 관한 대응방안)
2014.10.16	한국	일본(교토)-한국 이동	입국

【방문 기관별 회의결과】

□ 동경공업대학

- ◆ 일시 및 장소: 2014년 10월 13일 16:00~21:00,
동경공업대학 (Toyoko-inn Hotel)
- ◆ 안 건: 빅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방안
- ◆ 참석자: 원외) 이종순 (동경공업대학 상정보연구소 교수),
Suzuki Siroyuki (동경공업대학 상정보 연구원 조교),
Taira Naoco (동경공업대학 상정보연구소 연구원),
Kida Gouichi (보건의료복지정보안전관리 적합성평가협회 이사장
Kaoru Sunada (일본국제대학교, 국제커뮤니케이션 센터 연구조교수)
원내) 송태민 연구위원, 이연희 책임전문원,
정진욱 부연구위원, 진달래 연구원

◆ 회의내용:

- 일본은 빅데이터는 2013년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추진 전략본부에서 발표한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 선언’에 의하면 향후 2020년까지 세계최고 수준의 IT 활용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음
- 빅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각종 기록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큼.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침입에 의한 유출의 위험성과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무의식적인 공개 또는 잠재적 위험성도 큼
 - 각 사업 분야를 소관하는 주무 부처에서 각 분야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있으며, 사업분야마다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이나 성질 용도가 달라 각 사업자는 사어업활동 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외에도 사업분야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 동경도청 청소년과

- ◆ 일시 및 장소: 2014년 10월 14일 11:00~12:30, 동경도청
- ◆ 안 건: 위기에 직면한 청소년 파악을 위한 대응 전략, 동경도 청소년 시책 내용 파악
- ◆ 참석자: 원외) Gatumata Ichirou, Kiyamita Katuhiro, Taira Naoka, Kita Gouichi
원내) 이연희 책임전문원, 정진욱 부연구위원, 진달래 연구원

◆ 회의내용:

- 위기에 직면한 청소년 파악을 위한 대응 및 전략 방안 논의
 - 일본은 2004년 8월에 청소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청소년 육성 종합 대책 추진 본부’를 설치하여 청소년의 히키코모리 정책, 비행청소년들의 회복 지원 등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청소년의 인터넷 유해환경에서의 대응 방안

- 인터넷 상에서 인터넷 게임 및 유해한 사이트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e-규칙 강화와, 강연회를 개최하여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 및 학교에서도 인터넷 중독 등 유해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09년7월 부터는 「Help desk」 포털을 개설하여 유해환경 사례별 대처방안, 인터넷 법률 등을 서비스 하고 있음

- ◆ 붙임: 1. 동경도청 청소년 인터넷 유해정보 관리 현황 정리
2. 동경도 왕따 방지 대책 추진 조례 (平成 26년 동경조례 제 130호 정리)
3. 일본 인터넷 법률 정리

□ 교토 가정지원종합센터

- ◆ 일시 및 장소: 2014년 10월 15일 16:30~20:00, 교토 가정종합지원센터
- ◆ 안 건: 청소년 정신건강, 자살, 히키코모리 등에 대한 치유정책 논의
청소년 환경적 위해요인에 대한 대책 논의
- ◆ 참석자: 원외) Shirokazu Muneo, Mitake Sayuri, Kannamori Masaaki
원내) 이연희 책임전문원, 정진욱 부연구위원, 진달래 연구원
- ◆ 회의내용:
- 교토는 인구대비 범죄자가 57,000명에 해당함. 이중 20%가 청소년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차세대 육성 추진법(2004년 실행)을 제정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녀 양육에 지원하였으며, 가정지원센터는 2010에 설립하여 신체 및 지적 장애아, 아동학대·폭력, 비행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음
 - 상담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기간 보호 시설 입소를 통하여 생활 지원도 하고 있음
 - 히키코모리 지원 프로그램
 - 가정 방문 상담을 통한 지원, 가정 이외의 곳에서 상담 지원, 사회 참여 준비를 지원하는 그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상담기관, 교육상담센터 등에서 히키코모리를 탈피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다양함
 -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므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definition이 필요함
- ◆ 붙임: 1. 청소년 히키코모리 및 비행청소년 지원책 정리

일본의 유해환경으로 부터의 위기청소년 관리 현황

- 일본은 2004년 8월 청소년 문제를 중점으로 담당하는 「청소년 육성 종합 대책 추진 본부」를 설치하여 히키코모리 대책, 비행 청소년의 회복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인터넷과 게임이 청소년의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으면서 유해한 사이트에 노출이 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발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이에 따라 추진본부에서는 인터넷 게임이나, 유해한 사이트로부터 청소년을 지키기 위하여 2008년부터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e-규칙 강좌 및 강연회를 개최하여 가정에서 예방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사업을 확충하고 있음

1. 동경도청 청소년과 인터넷 유해 정보 관리 현황

- 일본에서는 인터넷, 휴대 전화의 보급에 따라서 아동·청소년들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특히 아동·청소년들은 가공청구, 인터넷, 집단 괴롭힘, 스팸 메일, 유해 사이트 등의 문제에 연루가 되거나 피해자 및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일으킴
 - 이에 따라 아동이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 보호자가 신속하게 조치 할 수 있도록 「Help Desk(www.tokyohelpdesk.jp)¹⁾」 포털을 통하여 유해환경 사례별 대처 방안, 인터넷 법률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전화상담, E-mail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2013년 전체 상담 건수 2,231건 중 청소년을 당사자로 하는 상담 건수는 1,743건으로 78.1%가 청소년 상담 건수로 조사됨²⁾
 - 청소년 상담 건수 중 가장 비율이 높은 상담 사례별로 ‘가공 청구’건이 722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상담을 제외하고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상담 사례는 ‘교제’가 173건이 상담됨

1) Help desk는 동경도 청소년부에서 개설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로 2009년 7월에 오픈하였으며, 아동 및 청소년이 안고 있는 인터넷 및 휴대전화 문제에 대하여 아동을 비롯한 보호자, 학교 관계자 등으로부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이 인터넷 유해환경으로부터 위험수위가 높을 경우 상담기관, 학교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2) http://www.seisyounen-chian.metro.tokyo.jp/seisyounen/01_shisaku_1_2_2.html#sec4

- 상담 매체별로는 스마트폰을 통한 상담이 전체 1,064건, PC를 통한 상담이 154건, 휴대전화를 통한 상담이 112건 순으로 나타남(표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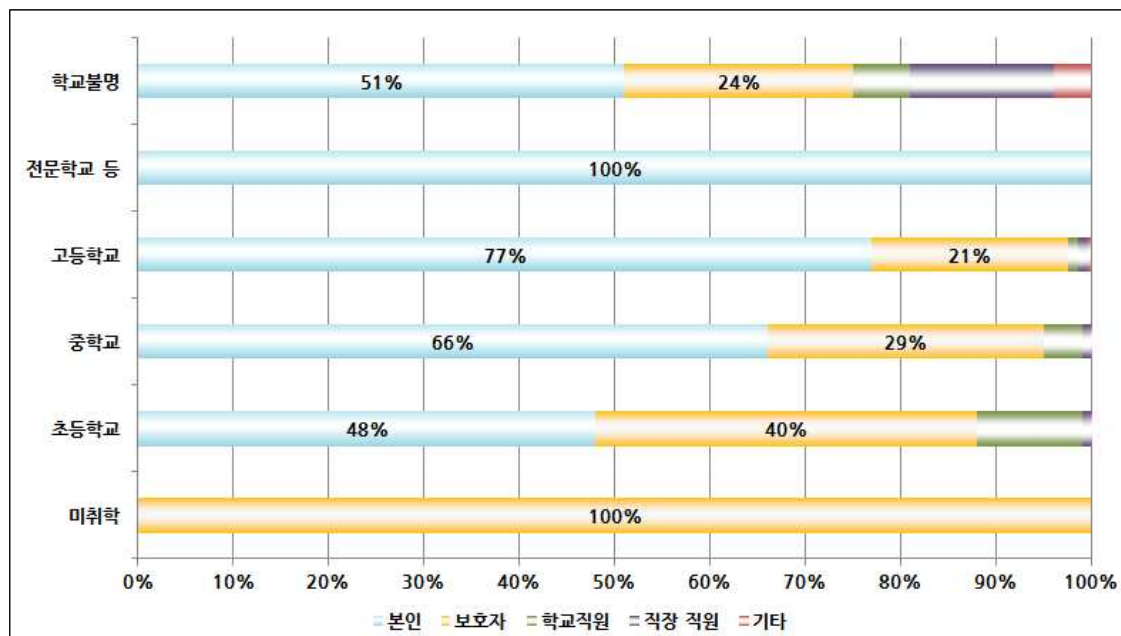
〈표 1〉 2013년 청소년 육성 종합 대책 추진본부 청소년 유해정보 상담 사례별 현황

	PC	휴대전화	스마트폰	PHS	휴대게임기	기타	불명	대상밖	합계
가공청구	60	21	534		5	136	16		772
경매		1							1
쇼핑	1	1							2
온라인게임	2		1				2		5
사이버왕따	4	2	24				12		42
명예훼손	3	4	20	1		3	18		49
스팸		11	58						69
체인메일	4	3	3						10
유해사이트	7	1	18		17		3		46
부정한 접근	1		3						4
저작권법위반		1							1
의존	12	1	10			8			31
교제	3	14	74		3	14	2		110
삭제방법	17	4	111		4	14	23		173
요금 관계	2	6	14		2	2	1		27
기타	33	28	175		11	32	13	30	322
대상밖의 상담	4	14	17			2		38	75
의미불명	1		2					1	4
합계	154	112	1,064	1	42	211	90	69	1,743

자료:

- [그림 1] 과 같이 상담 연령이 높아질수록 본인이 스스로 상담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미취학아동, 초등학생과, 전문학교를 제외한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학교 등에서 본인 상담 비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연령별 청소년 상담 비율



- 동경도청 청소년 치안 대책 종합 대책부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유해한 인터넷 정보 및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구입 시 보호자에게 ‘가정의 룰’을 만들어 이용 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소통 후 구매를 권장하고있음
-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이용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질 경우 청소년의 경우 성매매 범죄 피해, 약물 중독, 왕따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 스마트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 법 제6조3)에 의거하여 법률적으로 인터넷 유해정보를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필터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보호자의 책무와 역할로 여기고 있음(그림 2 참조).
- 필터링 서비스를 통하여 해당 아동 및 청소년이 유해환경 사이트를 열람할 수 없도록 차단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미성년자가 휴대전화 가입 시 필터링 어플리케이션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유해환경에 노출 되지 않도록 설정 하여야 하며,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필터링 어플리케이션을 삭제 하였을 경우 보호자에게 ‘필터링 서비스가 삭제되었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가 전송됨

[그림 2] 동경의 아동/청소년 스마트폰 가입 시 유해정보 차단 필터링 서비스



3)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 법: 18세 미만의 아이가 휴대전화, PHS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보호자는 PHS사업자에게 구매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가 유해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필터링 서비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유해한 웹사이트도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2. 청소년 히키코모리 및 비행청소년 지원책

1) 히키코모리 지원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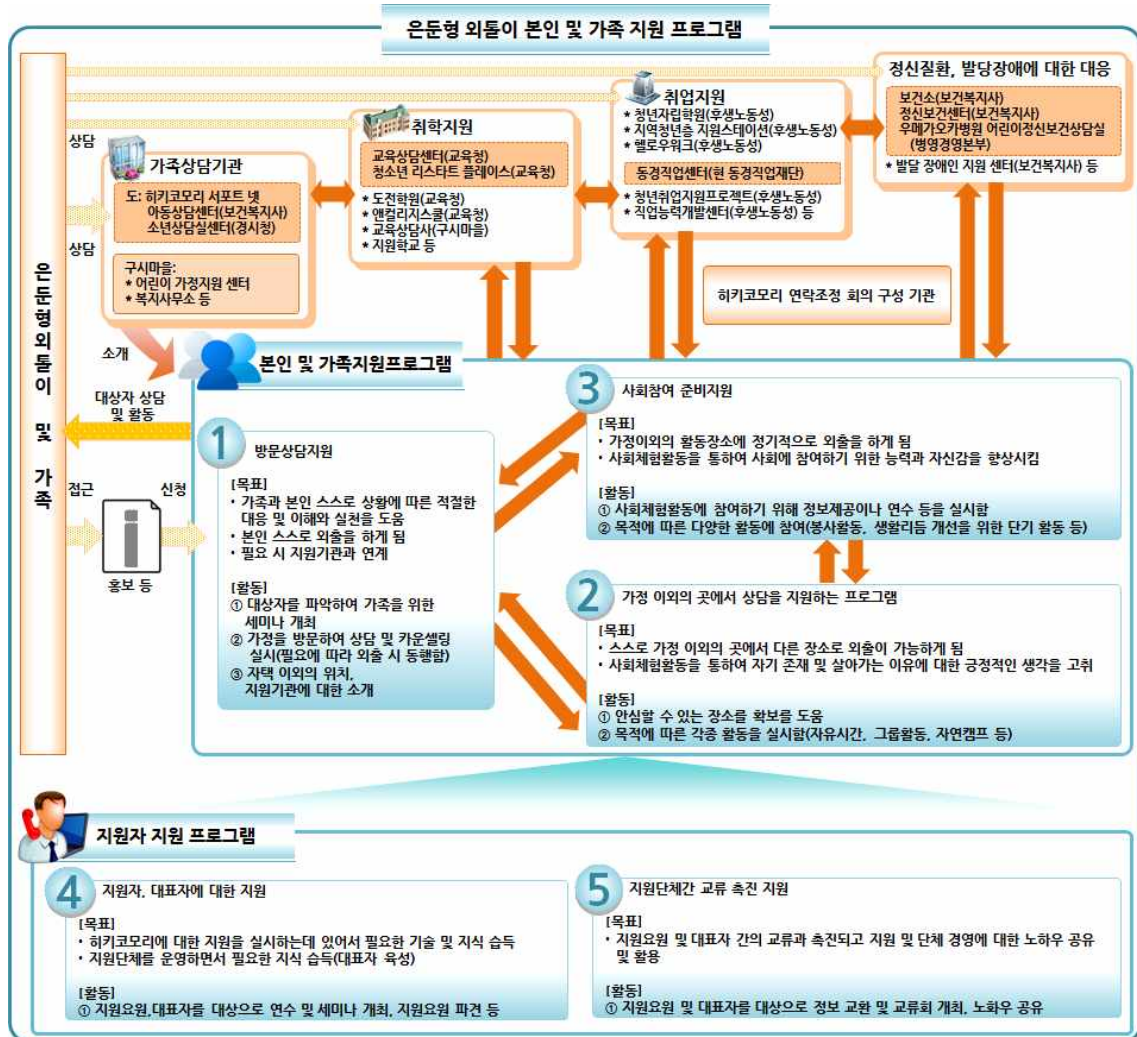
- 일본에서 은둔형 외톨이(ひきこもり, 히키코모리)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사회적 참여가 협소해 지고, 취업이나 취학 등의 생활을 하지 않고 자택 이외에서 생활이 장기적으로 걸쳐 잃어버린 상태로 정의함⁴⁾
 - 이러한 은둔형 외톨이(ひきこもり)는 본인이나 가족에게 심각한 문제 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경도에서는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위한 조치를 상담 사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동경도에서 청소년 종합상담소인 은둔형 외톨이 지원 포털 「東京都ひきこもりサポートネット(hikikomori-tokyo.jp)」은 전화상담, 방문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문상담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후 15세 이상에서 34세 미만이며, 히키코모리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 진행되고 있을 시 방문 상이 가능
 - 방문 상담의 경우 1인 5회까지 상담이 가능하며 ‘무료’로 상담을 지원
 - 히키코모리 상담지원자가 의료기관 및 병원센터, NPO 법인 등의 지원 기관과 상담을 한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방문 상담을 받지 않음(그림 3)

[그림 3] 동경의 청소년 히키코모리 상담 지원 포털



4) 동경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웹(東京都ひきこもりサポートネット): <http://www.hikikomori-tokyo.jp/guide>

- 히키코모리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NPO법인 등이 「동경도 청년 사회 참여 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대인관계의 서투른 의식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자원봉사, 체험활동)를 통한하여 히키코모리를 탈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함(그림 4 참조)



- 교토에서는 청소년들의 비행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들의 회복 지원을 위하여 「가정지원종합센터」를 설치하여 학교, 경찰, 아동상담소 또는 가정법원과 연계하여 청소년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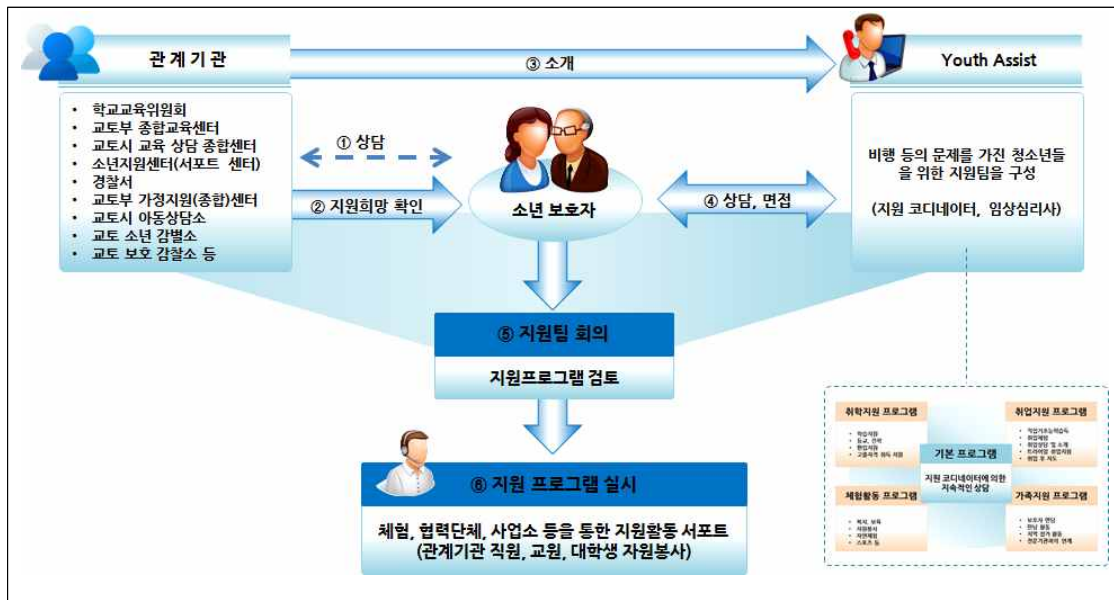
○ 청소년들의 비행 등의 문제를 지원하는 「Youth assist」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음

- 「Youth assist」는 지원대상은 중학생부터 성인까지이며, 지원코디네이터·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에게 적

합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재기를 돕는 프로그램임

- 상담을 통하여 취학(학습지원, 등교 및 진학, 편입지원, 고졸 자격 취득 지원), 취업지원(직업 기초 능력 습득 교육, 취업 체험, 취업상담 및 소개, 임시 취업, 취업 후 지도), 체험 활동 프로그램(복지 및 보육, 자원봉사 활동, 자연체험, 스포츠 등의 활동), 가족지원(보호자 면담, 만남활동, 지역 참가 활동, 전무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지워하고 있음(그림 5 참조)

[그림 5] 교토 「Youth assist」 제공 프로세스 및 프로그램



[첨부1]

동경도 왕따(いじめ) 방지 대책 추진 조례(헤세이 26년 동경조례 제130호)

(목적)

제1조 이 조례안은 왕따(いじめ) 방지 대책에 기본이념에 따라 동경도(이하, 都(도)라 명명), 학교설립자, 학교 교직원 및 학부의 책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동경도 대책에 관한 기본적인 상황을 정하고 왕따(いじめ)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2. 이 조례에서 「왕따(いじめ)방지 등」라 일컬음은 이지매(いじめ)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비재의 조기발견 및 왕따(いじめ)에 대한 대처를 말한다.
3. 이 조례에서 「학교」는 학교교육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등학교(小學校),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및 특별지원학교이며, 도시, 구시 마을,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쇼와⁵⁾ 24년 법률 제270호), 제3조에 규정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4. 이 조례에서 「아동 등」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아동 또는 학생을 말한다.
5. 이 조례에서 「보호자」는 양육을 하는 자(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후견인)을 말한다.

(기본이념)

제3조 왕따(いじめ) 방지를 위한 대책은 왕따(いじめ)가 아동의 생활, 심신의 안전한 성장과 인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을 감안하여 모든 아동이 안심하고 학습 또는 기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안과 밖에서 왕따(いじめ)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이념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2. 왕따(いじめ) 방지를 위한 대책은 아동의 생활, 심신을 보호하여 아동이 왕따(いじめ)에서 확실히 보호되게 하고, 왕따(いじ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왕따(いじめ)를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지 않고 왕따(いじめ) 아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체적으로 행동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이루어 져야 한다.
3. 학교에서 왕따(いじめ)방지를 위한 대책은 왕따(いじめ) 조치가 실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교 전체 조직으로 임하는 것을 취지로 이루어 져야 한다.
4. 왕따(いじめ)방지 대책은 학교뿐만 아니라 도시, 구시 마을, 지역주민, 가정과 기타 관계자의 연계 하에 사회 전체에서 왕따(いじめ)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 져야 한다.

5) 쇼와: 일본 서기 1926년부터 1989년까지의 일본의 연호

(왕따(いじめ) 금지)

제4조 아동은 왕따(いじめ)를 해서는 안 된다.

(동경도의 책무)

제5조 동경도는 제3조에 규정하는 기본 이념(이하 기본 이념)에 따라 구시 마을 및 왕따(いじめ) 방지에 관계하는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종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책무를 가진다.

(학교 설립자의 의무)

제6조 학교설립자는 기본 이념에 따라 학교에서 왕따(いじめ)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책무를 가진다.

(학교 및 학교교직원의 책무)

제7조 학교 및 학교교직원은 기본이념에 따라 해당 학교에 재적하는 아동 등의 보호자, 지역주민 및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연계를 도모하여 학교에서 왕따(いじめ)를 미연에 방지하고 왕따(いじめ)의 조기 발견에 힘을 쓰고, 학교 내 학생이 왕따(いじめ)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책무를 지닌다.

(보호자의 책무)

제8조 학부모는 자녀 교육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왕따(いじめ)가 아동의 생명, 심신의 건전한 성장 및 인격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보호자는 학생이 왕따(いじめ)를 당하지 않도록 해당 아동에 대한 규범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도를 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보호자는 보호하는 학생이 왕따(いじめ)를 당한 경우에 적절하게 아동을 왕따(いじめ)에서 보호하여야 한다
3. 보호자는 동경도, 학교설립자 및 그 설립하는 학교가 왕따(いじめ)방지 등에 대한 조치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경도의 왕따(いじめ) 방지 대책 추진 기본방침)

제9조 동경도는 왕따(いじめ)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왕따(いじめ) 방지 대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동경도 집단 따돌림 방지 대책 추진 기본 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고 정한다.

2. 기본방침은 「집단 따돌림 방지 대책 추진 법(헤세이 25년 법률 제71호, 이하 법)」 제 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왕따(いじめ) 방지 대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방침으로 한다.

(동경도의 왕따(いじめ) 문제 대책 연락 협의회)

제10조 왕따(いじめ)방지에 관계하는 기관 및 단체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교, 도경도 교육 위원회, 동경도 아동 상담센터, 동경 법무국, 경시청 관계자로 구성된 도경도 왕따(いじめ) 문제 대책 연락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둔다.

2. 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 ① 구시 마을 또는 학교에서 왕따(いじめ)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에 대한 사항
- ② 왕따(いじめ) 방지에 관계하는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왕따(いじめ) 방지 등을 위한 대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동경도 교육 위원회 규칙명
으로 정한다.

(동경도 교육 위원회 왕따(いじめ) 문제 대책 위원회)

제11조 기본방침에 의거하여 동경도에서의 왕따(いじめ) 방지 등 대책을 실효적으로 하기 위하여 법 제 1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동경교육위원회 부속 기관으로 동경교육위원회 왕따(いじめ) 문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명명)를 둔다

- 2. 대책위원회에서는 동경교육위원회 자문에 응하면 왕따(いじめ)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에 대해 조사 심의에 답신하여야 하다.
- 3. 대책위원회는 왕따(いじめ) 방지 등 대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동경교육위원회에 의견을 말할 수 있다.
- 4. 대책위원회는 도립학교(동경도립학교설치조례(쇼와39년 동경조례 제113호) 제1조에 규정하는 돌비학교를 말함)에서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중대 사태(이하 중대사태라 명명)이 발생한 경우, 규정하는 조사(이하 법 제28조 조사라 명명)를 하며 이 결과를 동경교육위원회에 보고한다.
- 5. 대책위원회는 학계전문가, 법률, 심리, 복지 등에 관한 전문가를 동경교육위원회가 임명하는 위원을 10명 이내로 조직한다.
- 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다만 연임은 막지 않는다.
- 7. 2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대책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경도교육위원회 규칙을 따른다.

(동경도 왕따(いじめ) 문제 조사 위원회)

제12조 법 제30조 제1항 또는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는 경우에 해당 보고에 관한 중대 사태 대처 또는 중대한 사태와 동등한 사태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법제30조 2항 또는 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속 기관으로서 동경도 왕따(いじめ) 문제 조사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명명)을 둘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자문에 따라 도시 혹은 학교 법인에 따라 법 제28조 조사결과에 대해 법제30조2항 또는 제31조 2항에 규정하는 조사(이하 재조사라 명명)를 한다.
3. 학교, 학교설립관계자는 재조사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4. 조사위원회는 학계전문가, 법률, 심리, 복지 등에 관한 전문가 등이 보고에 관한 법제28조 조사한 조직의 구성원 이외의 것 중에서 지사가 임명하는 조직을 10명 내외로 조직한다.
5. 위원의 임기는 지사가 임명하여 재조사가 종료할때까지로 한다.
6. 조사위원회 설치 시 지사는 이것을 동경도 의회에 보고한다.
7.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경도규칙으로 정한다.

(위임)

제13조 이 조례로 정하는 것 외에 조례의 시행 권한이 필요한 사항은 지사 또는 동경도 교육 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부터 제12조항까지는 헤세이 26년 8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다.

[첨부2]

일본 인터넷 법률

1. 인터넷을 통하여 이성을 소개하는 사업을 이용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유인하는 행위에 관한 규제 법률(만남 사이트 규제 법)
 - 18세 미만의 어린이는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 이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사랑, 돈을 목적으로 한 원조 교제 대상을 모집하는 것은 범죄행위임.
이 경우 유혹한 아동도 처벌의 대상이 됨
2.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를 위한 법률(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 법)
 - 18세 미만의 아이가 휴대전화, PHS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보호자는 PHS 사업자에게 이 구매 사실을 알려야 함. 아이가 유해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터링 서비스 이용해야 함
 -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유해한 웹사이트도 아이가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3. 전자 소비자 계약법
 - 인터넷 조작성 미숙으로 구매 할 생각이 없는 것을 잘못 구매한 경우 소비자 계약 법에 따라 실수에 의한 계약 무효를 주장 할 수 있음
4. 부정한 액세스 금지 법
 - 컴퓨터 보안이 허술하여 타인의 비밀번호나 ID를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5. 저작권법
 - 음악CD, 비디오, 책, 만화, 비디오 게임, 사진, TV 프로그램, 영화 등의 저작 권리가 있는 것을 마음대로 인터넷에 올리거나, 인쇄하여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음.
 - 단,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사망 후 50년이 지나면 저작권은 사라짐
6.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사업자 의무를 정한 법률이며, 사업자는 개인 정보 이용 목적을 공지하여야 하며, 부정적인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금지함
 - 또한, 데이터베이스화한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관리를 하여야 하며 개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7. 동경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조례

○ 이 조례는 인터넷 이용에 대한 보호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자는 필터링 소프트웨어 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인터넷을 적절하게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 있음

- ① 18세 미만 청소년이 휴대 전화 등을 가입하거나 사용할 때 유해정보 열람을 방지하는 필터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휴대전화 판매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인터넷 이용에 따라서는 위험성과 과도한 이용에 따른 폐해에 대하여 보호자는 예방교육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③ 보호자는 청소년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법 행위를 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 이용에 관한 규칙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청소년 연령에 따라 휴대폰 단말이나 이용가능한 기능을 권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